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58회 제1차정례회(2022. 9. 2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2-104

2022. 9. 28.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한선미 의원 외 9명

나. 제 안 일 : 2022. 9. 8.

다. 회 부 일 : 2022. 9. 14.

2. 제안이유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구민의 건강위해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주변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지도원 운영 등의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됨.

3. 주요내용

가. 금연구역의 지정 관련 조항의 정비(안 제6조제1항제8호)

나.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9조의5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 입법예고 : 2022. 9. 15.~ 9. 19.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 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여 영·유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안되었음.

○ 아울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홍보 등의 지원에 필요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되었음.

나.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6조제1항제8호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제9조제6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사항임. 이는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안 제11조의2는 법 제9조의5에서 규정하는 금연지도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으로 마련된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인 공공장소 등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영유아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개정 조례안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것이 없음.

○ 아울러, 금연지도원은 사회구성원간의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단속과 금연 홍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바람직해 보임.

○ 다만, 단속의 실효성에 관한 사항 중 단속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서 뒷받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전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집행부서에서는 효과적인 금연지도원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를 충실히 하고 단속 및 계도에 따른 흡연자와의 갈등에 대비하여 주민 홍보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겠음.

[관 계 법 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9조의5(금연지도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그 금연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그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⑧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